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2013. 10. 17. 배포]

I. 공증촉탁서의 기재

1.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의 모든 사항을 대필하는 것은 금지된다(지침 8조 3호). 다만, 지침 제6조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과 비고란을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지침 6조에 따라 촉탁서 비고란을 작성하는 경우, 비고란에는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지침 제6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과 '대리인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대신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 다만, 공증인 면담 일시 등은 지침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공증촉탁서의 비고란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

- 즉, 원칙적으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은 촉탁인(서약인)이, 비고란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은 자필기재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재해도 무방하고, 별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II. 번역인 및 번역의뢰인의 범위

1. 지침 제2조 3항의 번역인은 번역문을 실제 번역한 사람(자연인)을 말하므로 그 자연인이 소속된 법인, 단체, 회사, 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단체, 회사, 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으로 취급될 수 없고, 서약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2. 지침 제4조 2호의 '번역의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서를 국내 또는 국외의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원문에 번역의뢰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번역의뢰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문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증인은 그가 지침 제4조 2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법인, 단체, 기관의 임직원이 법인, 단체, 기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이 작성한 재직증명서(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말한다) 등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임직원 또한 지침 제4조 2호의 '번역의뢰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 ※ 법인 등의 임직원이 '번역의뢰인'이 아닌 지침 제4조 제1호의 '번역능력 있는 번역인'의 자격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III. 공증인이 번역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1. 공증인법 제21조 제3호는 '공증인이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촉탁인과 공증인 사이에 고용, 위임 등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증인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공증사무소의 내부 직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고용한 사람이 번역문을 작성

하고, 그 사람이 해당 번역문 인증의 번역인이 되는 경우 해당 공증인은 위 제척규정에 위반된다.

2. 공증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번역의뢰인(번역문 인증 촉탁인)의 편의를 위해 주변에 있는 번역인 사무소를 단순히 안내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척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인과 번역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규정 위반이다. 의뢰인이 번역수수료를 공증사무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번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척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을 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경우

-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으로부터 번역인 협약서,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은 다음, 번역의뢰인을 촉탁인(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경우.